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

(최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9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5일

발 의 자 : 최 선, 권순선, 김상진,
김생환, 김수규, 김용연,
문영민, 양민규, 이동현,
이석주, 이준형, 이호대,
전병주, 최기찬, 황인구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및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교내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3년마다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다. 안전한 학교 시설 자재 및 교육기자재 공급을 위해 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함(안 제6조).
- 라.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함(안 제7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보건법」 제4조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.
2. “유해물질”이란 「학교보건법」, 「환경보건법」 및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등에서 학교시설 및 교육기자재에 관하여 정하는 안전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

립·시행한다.

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
2.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
3.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4.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관리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점검 등) ① 학교의 장은 「학교보건법」 제4조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유해물질을 적절히 유지·관리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학교시설에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,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·실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) ① 교육감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시설 자재 및 교육기자재(이하 “안전한 학교용품”이라 한다)의 공급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안전한 학교용품의 물류·유통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
2. 안전한 학교용품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
3. 그 밖에 안전한 학교용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
③ 교육감은 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학교시설과 교육기자재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8조(유해물질 관리 등 지원) ① 교육감은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의 예방·관리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·보급하고 교육·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교직원 연수) 교육감은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0조(정보제공)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유해물질로부터의 노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학교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과 안전성을 개선한 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관련 정보의 교류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서번호	2021012900000018
------	------------------

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최선 의원	담당 :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원동아 예산분석관
접수일 : 2021.01.29.	
회신일 : 2021.02.04.	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- 1. 비용발생 요인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- 3. 미첨부 사유
- 4. 작성자

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6조(안전한학교용품지원 센터)에 따라 비용 발생
- ※ ① 단, 같은 조례안 제5조(점검 등), 제7조(실태조사), 제8조(유해물질 관리 등 지원), 제9조(교직원 연수)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사업을 통해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(붙임 참고)
- ② 같은 조례안 제10조(정보제공)는 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전제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[제6조(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)에 해당]
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≙ 1,000,000천원(연평균 200,000천원)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천원으로 연평균 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- 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 설치·운영 비용은 2021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‘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·운영’ 사업예산(2억원)을 준용하여 비용을 추계함
 -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 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≙ 1,000,000천원(연평균 200,000천원)
 - 총비용 = 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 설치·운영
 - = 1,00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합 계
구분	-	-	-	-	-	-	-
	소계 (a)	-	-	-	-	-	-
세입							
세출	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 설치·운영 (안제6조)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1,000,000
	소계 (b)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1,000,000
총비용(b-a)	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1,000,000

○ 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 설치·운영 ≙ 1,000,000천원

- 산출방식 $\sum_{i=1}^5$ (연간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설치·운영비용)_i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1~2025)

- 연간 안전한학교용품 지원센터 설치·운영 비용 ≙ 200,000천원

-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에서 녹색제품 정보제공 및 교육·홍보 등 녹색소비 활동 추진을 위하여 2021년에 설치한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사업예산 2 억원을 준용하여 비용을 산출함

과목구분	2021년 예산내역
민간위탁금	○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, 운영 = 200,000천원

출처 : 2021년 예산 사업설명서(기후환경본부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조도형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주무관 원동아

☎ 02-2180-7953

e-mail : dongyal@seoul.go.kr

【붙임】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

(단위:천원)

구분	세부사업명 (세세부사업명)	2021년 예산	사업내용
제5조(점검 등) 제7조(실태조사)	과학교육활성화 (과학실안전관리강화)	447,500	(과학실안전관리강화) - 내용 : 안전하고 효율적인 과학실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연구 및 결과 확산, 과학교육 전문가로 과학실험 안전교육 현장 지원 컨설팅단 구성, 현장 방문을 통한 실험 안전교육 컨설팅 및 안전 관련 현장점검 지원 및 실험실 관련 제반 업무 지원 - 소요예산 : 447,500
제9조(교직원 연수)	과학실험안전역량강화연수	10,500	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실험실 종사자 등 역량 강화 - 대상 : 과학실험실 종사자 - 내용 : 기 개발된 과학실험 안전교육 자료 등을 활용하여 연수 추진, 연수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되, 원격, 집합, 현장 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, 2015 개정 교육과정, 「화학물질관리법」 및 「폐기물관리법」 등을 반영한 과학실 안전 관리 역량 강화 및 실험 실습지도 역량 강화 연수 운영 - 소요예산 : 10,500천원
제8조(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지원)	창의융합과학실험실환경구축 (과학실험 폐수 및 폐시약 처리)	401,500	- 대상 : 전체 초·중·고 - 내용 : 과학실험실 폐수 및 폐시약 일괄 수거처리 - 소요예산 : 401,500천원
	창의융합과학실험실 환경구축	4,968,060	- 대상 : 전체 초·중·고 - 내용 : 학생·교사의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실

구분	세부사업명 (세세부사업명)	2021년 예산	사업내용
			험실 리모델링·안전장비 확보 등으로 안전한 실 험환경 구축, 온·오프라 인병행 실험기구 확충, 실험실 안전시설 확충 및 장비구입 등 - 소요예산 : 4,968,060천원

자료 :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